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인사/노무 중대재해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도 하여금 근로자가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SG 인사/노무	②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국회 계류안	공정거래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포 법령	ESG 에너지/인프라 조세	④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신설.
입법/행정 예고	건설/ 부동산	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장제원 (국민의힘)</p>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오·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M1V1D2W1K4F1J6P1V7Y5J0S1U3F7</p>		21.12.22.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강은미 (정의당)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발전과 변화에 따라서도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 근로자와 취약계층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 머문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법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21.12.23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p> <p>라.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처의 설치 근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p> <p>마. 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p>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1A1G2V0Z3B1T0Z4V4C5J8O6D9M7</p>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배진교 (정의당)</p>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스스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음. 이에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129조제1항 삭제). <p>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Z0E1V2G1O1P2R0R5Q7H2J5C7W2M4</p>	<p>헤럴드경제 21.12.27. 공정위vs검찰 전속고발권 두고 신경전... 입법은 지지부진 [공정거래사건 형사화 논란]</p> <p>http://news.heraldoorpc.com/view.php?ud=20211227000059</p>	<p>21.01.11. 제안</p> <p>21.03.1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p>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퍼센트가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25조제3항)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p>출처:https://www.law.go.kr/법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18584,20211221)</p>		21.12.21. 일부개정 22.01.01.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 개정이유</p> <p>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 우리나라 국민은 공동주택에서 62.9%(단독주택 30.4%, 아파트 51.5%, 연립·다세대주택 11.4%)가 살고 있고,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에서 11.4%(289,574개동)가 살고 있으나 화재는 공동주택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거공간(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연립·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p>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p>	<p>연합뉴스 21.12.26.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처럼 스프링클러 갖춰야...법개정 추진</p> <p>https://www.yna.co.kr/view/AKR20211224132900530?input=1195m</p>	21.12.16. ~ 22.01.26.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6533?opYn=Y&lsNm=%ED%99%94%EC%9E%AC%EC%98%88%EB%B0%A9%2C+%EC%86%8C%EB%B0%A9%EC%8B%9C%EC%84%A4+%EC%84%A4%EC%B9%98%C2%B7%EC%9C%A0%EC%A7%80+%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isOgYn=Y&edYdFmt=2021.+12.+28.&stYdFmt=2021.+6.+1.>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실

[동아일보][사설]준비 안 된 중대재해법, 억울하게 감옥 갈 CEO 쏟아낼 것(2021.12.2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27/110976069/1>

주요내용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벌을 면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은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시행령이 나온 뒤 혼란이 더 커짐. 처벌 대상이 기업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경영자가 지킬 의무를 “안전보건 인력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하는 등 시행령도 모호함. 정부와 정치권은 필요하면 시행을 몇 년 늦춰서라도 과도한 형사처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고, 추상적 법령 내용을 명확히 보완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기업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함.

[한국일보][사설]한 달 앞둔 중대재해법, 책임 회피보단 안전 보강을(2021.1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715450003013?did=NA>

주요내용 노동계에 따르면 한 대형건설사는 하청업체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이동형 CCTV)을 착용시킬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노조의 항의를 받음. “어떻게든 사고 후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는게 노동계의 주장. 올 상반기 한 노동단체는 수십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분리 시도한 사업장 40여 개를 적발하기도 함.

670여 개의 조문을 가진 방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산재가 줄지 않자 ‘회사대표에게 직접 책임을 지워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제정된 게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은 산재 취약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시간임.

[파이낸셜뉴스][사설]시행 코앞 중대재해법, 보완 호소 안 들리나(2021.12.27)

<https://www.fnnews.com/news/202112271722292504>

주요내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제 문제는 형사적 접근보다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다루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함. 지금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도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함.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과로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때도 대표이사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경영계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음. 중대재해법이 원용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혼동, 처벌범위를 확대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많음. 무엇보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의 확정이 시급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인사/노무팀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에너지/인프라팀



박미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31
E : mmpark@draju.com

조세팀



김신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57
E : shiny@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